

# 뉴질랜드(New Zealand)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898년(노령연금), 1911년(미망인연금), 1924년(맹인연금), 1936년(장애연금), 1954(전쟁연금)
- 현행법 : 1964(사회보장제도), 1965년 시행; 2014년(참전용사 지원) 시행

## 2 제도형태

- 기초연금제도(universal) 및 사회부조제도  
※ 순 급여액은 주요 소득원으로 간주될 수 있고 초기 적용세율에서 과세할 수 있음.

## 3 적용대상

- 모든 뉴질랜드 법적 거주자

## 4 재원조달

- 가입자 : 없음
- 자영자 : 없음
- 사용자 : 없음
- 정 부 : 일반조세로 비용 전액 조달

##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기초연금제도)
    - 65세에 도달하고, 50세 이후의 최소 거주 기간 5년 이상을 포함하여 20세 이후의 지속적이고 물리적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하며 청구 당시 뉴질랜드 거주자여야 함
    -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그들의 연금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한 연금수급자는 제외하고는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음
    - 30주 미만 해외 체류 시 최대 26주까지 연금 해외 송금 가능함; 수급자의 뉴질랜드 거주 기간과 적용 가능한 상호협정 및 국내 법령에 따라 26주 이상 연금 해외 송금 가능할 수 있음
  - 노령부조급여(사회부조, 자산조사)
    - 주택보조금, 장애수당, 응급 상황 지원금 및 다른 급여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한 노령 연금수급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음

○ 장애급여

- 장애연금(생활지원비, 사회부조, 자산조사)
  - 중증장애 혹은 정신건강 상태로 인해 제한된 근로능력(2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가지거나 전적으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간병하고 있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16세 이상 뉴질랜드 국민 또는 영구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자에게 지급함
  - 장애연금은 특정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외 지급 가능
- 간병인 수당(생활지원비, 사회부조, 자산조사요건)
  - 심각한 장애 또는 정신 상태인 사람을 전적으로 간병하는 18세 이상(예외적인 경우 16~17세)의 뉴질랜드 국민이거나 영구적으로 최소 2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자에게 지급. 간병 받는 사람은 간병인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아니어야 함
- 장애보조급여(사회부조, 자산조사)
  - 주택보조금, 가정환급금, 급여 선지급, 교육장려금, 취업준비금, 장애수당, 임시추가급여, 응급 상황 지원금 등의 급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 될 수 있음

○ 유족급여

- 배우자 연금(구직자지원, 사회부조, 자산조사)
  - 자녀가 없거나 가장 어린 자녀가 14세 이상인 미망인에게 지급됨
- 유족연금(한부모지원, 사회부조, 자산조사)
  - 가장 어린 자녀가 14세 미만인 미망인에게 지급됨
- 고아급여(사회부조, 자산조사요건)
  - 사망, 행방불명, 장기간의 중증장애로 인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생물학적 부모 또는 입양 부모를 가진 18세 미만 고아의 주양육자에게 지급됨. 양육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동을 최소 12개월 동안 양육해야 함. 해당 아동은 뉴질랜드 거주자이어야 하며 물리적으로 뉴질랜드에 있어야 함; 또는 양육자가 거주자여야 하며 지속적, 물리적으로 뉴질랜드에 최소 12개월 동안 거주해야 함
- 장제비(사회부조, 자산조사)
  - 사망자의 동거인, 배우자, 자녀, 부모, 후견인, 또는 이들의 부재 시 장례비를 지급한 사람에게 지급됨. 사망자의 사망 전 상황, 유족연령, 자녀수,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소득 및 자산조사 있음
- 유족지원급여(사회부조, 자산조사)
  - 주택보조금, 급여 선지급, 교육장려금, 취업준비금, 장애수당, 응급 상황 지원금 등의 급여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유족 수급자에게 지급됨

---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 노령급여

-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기초연금제도)
  - 독신이고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주당 순 NZ\$400.87 지급, 독신이고 공동거주 시 순 NZ\$370.03 지급, 법적 혼인, 동성, 또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NZ\$308.36을 지급

-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주당 최대 순(net) NZ\$586.18까지 지급되며 소득 조사 대상임(연금은 연간 총 공동 소득이 NZ\$5,200 이상일 시, NZ\$1마다 NZ\$0.70씩 감소함)
- 연금은 가입자가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급여의 NZ\$1마다 연금액 NZ\$1씩 감소할 수 있음
- 급여 조정 : 급여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조정되며 주당 순 평균 시간제 임금에 기초하여 추가로 조정됨. 순 주당 평균 시간제 임금은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고용조사에 따라 결정됨
- 노령보조급여(사회부조, 소득조사)
  - 추가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 가족 상황, 생활상태 등 다른 요소들에 따라 다름

#### ○ 장애급여

- 장애연금 및 간병인 수당(생활지원비, 사회부조, 자산조사)
  - 16~17세 독신이고 무자녀인 경우 주당 최대 순 NZ\$217.80 지급, 18세 이상의 독신이며 무자녀의 경우 순 NZ\$269.15 지급, 독신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순 NZ\$379.19 지급, 자녀가 없는 결혼한 부부이거나 동성 부부의 경우 순 NZ\$224.28을 지급
- 자산 조사: 급여는 총 연간 수익이 NZ\$5,200 이상인 경우 매 NZ\$1마다 NZ\$0.30씩 감소되며, 총 연간 수익이 NZ\$10,400 이상인 경우 매 NZ\$1마다 NZ\$0.70씩 감소; 시각장애인의 개인 소득은 제외
- 급여 조정: 급여는 매년 4월 1일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 장애보조급여(사회부조, 자산조사)
  - 추가보조금은 가입자의 수입, 가족 상황, 생활상태 등 다른 요소들에 따라 다름

#### ○ 유족급여

- 배우자연금(구직지원, 사회부조, 자산조사)
  - 피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주당 최대 순 NZ\$215.34 지급,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순 NZ\$334.05 지급, 급여 지급이 2013년 7월 15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순 NZ\$224.28을 지급
  - 자산조사 : 연금은 연간 총 소득이 NZ\$5,200 이상인 경우 매 NZ\$1마다 NZ\$0.30씩 감소되며, NZ\$10,400이상인 경우 매 NZ\$1마다 NZ\$0.70씩 감소됨
- 유족연금(한부모지원, 사회부조, 자산조사)
  - 주당 순 NZ\$334.05 지급
  - 자산조사 : 연금은 연간 총 소득이 NZ\$5,200 이상인 경우 매 NZ\$1마다 NZ\$0.30씩 감소되며, NZ\$10,400이상인 경우 매 NZ\$1마다 NZ\$0.70씩 감소됨.
- 고아급여(사회부조, 자산조사)
  - 수급자격이 되는 고아 당 연령에 따라 주당 최대 총 NZ\$229.83이 지급됨
  - 자산조사 : 불로소득을 연간 기본 고아급여 비율의 50% 이상 받는 경우, 매 NZ\$1마다 NZ\$1씩 감소됨(양육자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연간 기본 고아 급여 비율은 주당 순(net) NZ\$209.52임
- 장제비(사회부조, 자산조사)
  - 유족배우자, 동거인 또는 피부양자녀에게 최대 NZ\$2,516.19가 장례비용으로 지급됨

- 자산조사 : 사망자의 사망 전 상황과 유족의 연령, 자녀수, 사망자와의 관계를 토대로 소득 및 자산 조사 실시함
- 급여 조정 : 급여는 매년 4월 1일에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
- 유족보조급여(사회부조, 자산조사)
- 추가보조금은 가입자의 수입, 가족 상황, 생활상태 등 다른 요소들에 따라 다름

---

## 7 관리운영기관

---

-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https://www.workandincome.govt.nz>, <http://www.msd.govt.nz>
  - 지사를 통해 연금 및 급여관리

<2018년 ISSA 자료>